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  
근거 신설〉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88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 근거<br>신설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4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5.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 Ⅲ. 검토의견

####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7조).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u><br>1. ~ 5. (생략)<br><u>&lt;신설&gt;</u><br><br>6. (생략)<br><u>&lt;신설&gt;</u>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① -----<br>-----<br>-----<br>-----.<br>1. ~ 5. (현행과 같음)<br>6. <u>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지원</u><br>7. (현행 제6호와 같음)<br>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br>1. ~ 17의3. (생략)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br>-----<br>-----.<br>1. ~ 17의3. (현행과 같음)                                                                                                                               |

|                                                                     |                                                                                                      |
|---------------------------------------------------------------------|------------------------------------------------------------------------------------------------------|
| <p><u>&lt;신 설&gt;</u></p> <p>18. ~ 25. (생 략)</p> <p>② ~ ④ (생 략)</p> | <p>17의4.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br/>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지<br/>원</p> <p>18. ~ 2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sup>1)</sup>에 따르면,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은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인상에 따른 연쇄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은 소상공

1)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박충렬, 『이슈와 논점』 (제2122호), 2023.8.8.

인이 비용 인상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궁극적으로 임금노동자를 비롯한 가계의 구매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동 보고서는 보았음.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sup>2)</sup>될 것임.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과 재정소요의 규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담능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 개정 없이도 현행 규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매출 3,000만원(현재는 6,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액은 2,520억원임.

또한,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특정 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재정부담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농·어업인 등 다른 정책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소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              |
|--------------|
| 문 의 처        |
| 02)6788-5465 |